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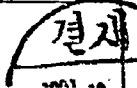
65기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개 302627809 (전화: 731-635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0년	<div style="font-size: 2em; font-family: cursive;">1991.10.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결재 1991.10.4 도시계획국장 </div>	
시행일자	1991.10.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문서통제
	도시개발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검열
	택지개발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통제관
기안책임자	나성수 (한선희)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9시 1991-10-4 </div>
제 목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		
제 1 안 (내부결재)			
1. 주공 서울(공) 1312-4494('91.8.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 서울 지사장으로부터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의견 수합하고 내용 검토하였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업의 명칭 :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0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한중				
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2) 토지 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개구	평		
계	27,300	8,258	100	
주택건설용지	21,010	6,355	77.0	
공공시설용지	6,290	1,903	23.0	
-도로	4,790	1,449	17.5	1개 노선
-공원	1,500	454	5.5	어린이 1개소
3)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3,796인 949호 건립				
라. 사업시행기간 : 1991. 실시계획승인일 - 1993.12.31				
마. 사업시행처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관악구 신림동 339번지 일원				
2) 면적 : 27,300 m^2 (8,258평)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식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 일간신문 각 1각지에				

결재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 별첨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별첨					
자. 연차별 자금 투입 및 재원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도별 계획			비 고
		'91	'92	'93	
계	9,280	120	8,300	860	대한주택공사 자채자금에서
보상비	8,670	100	8,000	570	재원 조달
조성비	610	20	300	290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관리 처분 계획					
0 기존 공공 시설(사업 시행자 귀속분) (단위 : m ²)					
구 분	소 관 부 서		계	비 고	
	건설부	서울시			
계	6필 4,467	1필 260	7필 4,727	추후 관련부서와	
도 로	2필 519	1필 260	3필 779	협의 결과에 따라	
하 천	4필 3,948	-	4필 3,948	조치	
0 신설 공공 시설 (거자체 귀속분)					
구 분	면 적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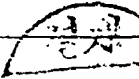
계	6,290 m ²	
도로	4,790 m ²	1 개 노선
어린이 공원	1,500 m ²	
카. 조건 : "별첨" (이거시행)		
첨부 1. 승인조건		
2. 고시문 1부		
3. 실시 계획 도서 1부. 끝.		
제 2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택지개발과장		
제목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보고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신림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및 승인서 사본 각 1부		
2. 실시계획도서 1부. 끝.		
제 3 안		
수신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		

<p>제목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p>	
<p>1. 서울(공)1312-4494('91.8.30)호와 관련입니다.</p>	
<p>2. 귀사가 위 대호로 신청한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 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으니, 승인조건 및 타법에 규정되 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1991. 10. 10</p>	
<p>- 다 음 -</p>	
<p>"제1안 다음 사항 이기사항"</p>	
<p>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기타 분야별 검토의견 1부 3. 실시 계획 승인 도서 1부. 끝.</p>	
<p>제 4 안</p>	
<p>수신 공보관실</p>	<p>발신 도시개발과장</p>
<p>제목 시보 게재 의뢰</p>	
<p>1. 아래와 같이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시보 게재 구분 : 고시</p>	
<p>나. 게재건명 :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p>	
<p>다. 법적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p>	
<p>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p>	
<p>제 5 안</p>	

1505-25(2-2) 앞(1)을
85. 9. 9. 승인

"내가야긴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x 265mm 인쇄용지양률 60g/m²
가 404 41 1982 11. 26

수신 수신처 참조	발 신 : 과 장
제목 신림지구 실시계획승인 통보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91.10.)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2. 본 승인으로 인한 도시계획결정(변경) 내용을 감안, 인근 지구계 외의 도시계획	
을 검토하는 등 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승인서 및 고시본 사본 각 1부	
2. 승인도서 1부. 끝.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공원과장, 농축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주택	
기획과장, 하수처리과장.	
제 6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신림지구 실시 계획 승인 통보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서울시 고시 제 호	
('91.10.)로 실시계획승인되었기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고	
2. 구할구청장은 일반에 공람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지적승인과 본 승인으로 인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감안, 인근 지구계획
외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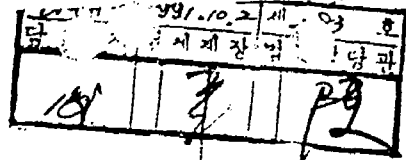
첨부 1. 승인서 및 고시문 사본 각 1부

2. 승인도서 1부. 끝.

수신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악구청장(도시정비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계획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한중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m ²	평		
계	27,300	8,258	100.0	
주택건설용지	21,010	6,355	77.0	아파트
공공시설용지	6,290	1,903	23.0	
- 도로	4,790	1,449	17.5	1개소
- 공원	1,500	454	5.5	어린이공원 1개소

다. 수용 인구 및 주택 계획 : 3,796인 949호 건립

4. 사업 시행 기간 : 1991. 실시기획승인일 - 1993.12.31

5.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339번지 일원

나. 면적 : 27,300 m²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 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7.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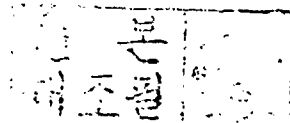
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조서 및 도면 : 별첨

9.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과 : 731-6352)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561-14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관계 도면 기재 생략)



하수 관련 검토의견

=====

1. 안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95년 완공 예정으로 있어, 공사 완료 이전에 하수 유입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법정 수질 기준 초과 우려
2. 발생 하수를 안양처리장에 유입 시킬 경우는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을 약7.1억원 부담하여야 함(부지매입비등 증감에 따라 변경가능함)
3.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단지 조성하되 지구내 우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지구의 우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지구 경계 부분에 절성토시에는 법면보호를 철저히 하고 강우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단지내의 기존하수관 이설시 관악구청 하수과와 협의 및 입회 시공할 것
6. 단지내는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고 오우수관은 각 1개소로 통합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키고 색상을 달리하여 오점을 예방하며, 유지관리상 최소관경은 우수관은 450m/m 오수관은 300m/m 이상으로 매설
7. 우수관은 소켓고무링 접합 읍관으로 하고 오수관은 P.C관을 부설
8. 하수관 연결은 유수방향으로 하수도 중첩교각이 60도 이내가 되게 하고, 하수관 시공시 기초를 설치하며 준공시 하수관내를 TV카메라로 촬영하여 정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 인수인계시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할 것
9.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형으로하고,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여 퇴적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0. 맨홀 구체와 판접합 부분에 수평창 고무지수판을 사용하여 지하수 유입을 방지 할 것
11. 하수 30500-15호('91.1. 14) 관련 하수도공사 시행방법 개선사항을 참조 하여 반영할 것.



서 언 특 별 시

하처 30350-~~1~~5

750 - 8671

1991. 1. 14.

수신 도시개발과장

제목 하수도 공사 시행방법 개선

산

1. 하수도 공사 시행방법 및 자재 검토후 개선사항을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할것.

가. 우리시에서 그동안 하수관 자재를 칼라흙관을 사용함으로써, 관접합 이음부에 지하수 유입과 하수누수 등으로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이 증가되어,

나. 인길관 접속시 관빠손(멍치로 타격)과 관내 인길관 돌출로 유수소통과 하수도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 하수관 시공시 기포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아 관의침하와 변형이 발생되며, 또한 제품의 강도 시험없이 불량제품관을 사용 매설후 관이 변형(찌그러짐)되며,

라. 하수도 분류식 지역의 우.오수관 오접으로 우수관에 오수가 오수관에 우수가 방류되고 있으며,

마. 하수관 매설후 준공감사시 저하매설물로 육안확인이 곤란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있어,

바. '91년부터는 공사 시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하수도 정밀시공과 수밀성 및 내구성을 향상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항상토록 하여 주시 바랍니다.)

2. 시행방법 개선

가. 하수관 인길공법 및 관계선

1) 우수관 및 우.오수 합류관은 칼라흙관에서 소켓트 고무링 합관으로 개선하고 인길관 접속본관은 T형(정자)관으로 할것.

2) 오수관은 칼라흙관에서 P.C관(D=500mm 이상)으로 개선하고 D=500mm 미만은 소켓트 고무링 합관을 사용할것.



3) 우.오수관 색상구분 - 오수관은 피랑색으로 우수관은 회색(전과동일)으로 할것.

4) 우.오수관 맨홀뚜껑 구분 - 오수관기 맨홀뚜껑은 뚜껑상부에 오수(문자) 표기토록 할것(표준도는 별첨1 참조)(단, 금년은 1), 3), 4)항은 종전제품과 병행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완전개선함 : * 조합 및 제품회사에 자재개선 요청을 기하였음.)

나. 시공방법 개선

- 1) 하수관로 기초는 하수구조물 표준도에 의거 설계 시공할것.
- 2) 맨홀구체와 관접합부에 수평향 고무수직판을 사용할것 (별첨2).
- 3) 하수도 공사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후 실개구베를 김축하고 특히, 관부설우 되메우기전에 종방향으로 반드시 사진 촬영할것.

다. 준공검사

1) 암기는 준공검사자가 전구관 관세를 육안으로 직접확인하고 준공검사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사진을 준공검사 조서에 첨부할것.

2) 관로는 검사자 임의하에 하수관에 T.V 카메라로 촬영하여 비디오로 확인 할것. (단, T.V 카메라 촬영비는 설계 도급내역에 반영할 것이며 촬영비는 별첨3 참조)

라. 대단지 비관리청 사업 하수공공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아파트건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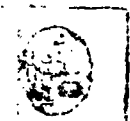
1) 시행방법개선 : 가, 나, 다항에 준함

2) 하수도 시설물 인수.인계시 관내 T.V 카메라로 촬영비디오 테이프를 첨부 토록 함.

첨 부 : 1. 관내T.V 조사공 일위디가표 1부.

2. 오수맨홀 설계뚜껑 1부.

3. 맨홀과 관접합부관 설계도 1부. 끝.



가로등 설치에 관한 검토의견.

가. 설치기준

=====

- 기준조도 : 20lx 이상
- 등 고
 - 편 측 : $H \geq 1.2 \times \text{차도폭}$
 - 지그재그 : $H \geq 0.8 \times \text{차도폭}$
 - 마주보기 : $H \geq 0.6 \times \text{차도폭}$
- 경 간 : $S \leq 3.5 \times \text{등고}$
- 전원공급 : 2회로 방식
- 전기요금 : 종량제
- 점소등방식 : 무선원격조정

나. 인수 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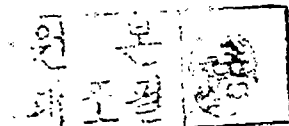
- 가로등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단계별 입주자 입주시기를
기준 인수 인계

다. 전력수용 신청

- 시설자의 명의로 전력수용 신청하고 인수인계후 관할구청장
명의로 변경

라. 기타 의견

- 가로등 시설은 한전 수전점부터 시공
- 모든 시설물은 인수인계전에는 시설주가 관리
- 등주의 모형은 9m이하는 원형, 10m이상은 팔각테파로 하고,
등기구는 세종로 대형으로 사용
- 추후 설치설계도서를 제검토 받아 시설



서울新林地區 宅地開發事業

實施計劃承認書

1991. 10

서울特別市

□ 추진경위

- '90. 7. 26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건설부 고시 제464호)
- '90. 10. 13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안)
서울시 협의
- '91. 5. 23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건설부 고시 제277호)
- '91. 6. 10 택지개발 계획승인 (서울시 고시 제171호)

□ 법적근거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 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4. 사업 시행기간
5. 사업목적 및 개요
6. 자금 계획서
7. 시설 계획
8. 토지능의 매수 및 보상 계획
9.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 송달 방법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별첨)
11. 수용할 토지능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12.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별첨)
13. 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별첨)
14.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첨)

1. 사업시행지

0 위치 : 서울특별시 권역구 신림10동 339번지 일원

0 면적 : 27,300M² (8.3천평)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0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0 사업의 명칭 :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수택공사 사장 김 한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4. 사업 시행기간

0 착공일 : 실시계획승인일

0 준공일 : 1993. 12. 31

* 공중별시행 계획(별첨)

0 공종별 시행계획

구 분	사 업 량	기 간 분 기	'91		'92				'93				
			3	4	1	2	3	4	1	2	3	4	
1. 용지매입 및 보상													
2. 조사설계	지형측량등												
3. 택지조성													
대지조성 공사	절성토: 75,000m ³												
도로축조및 포장공사	간선도로: 4.8a												
상수도간선 공사	250m/m:370m												
하수도간선 공사	박스2.0x2.0:190m 배수D-450:330m 오수D-300:160m												
조경공사	어린이공원												
전력간선 지중화공사	1식												
기 타	-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인근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주민의 가수용 또는 이주 정착용 주택건설을 위한 순천 개발용지로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불량주택 정비에 기여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M2)	구성비(%)	비 고
계		27,300	100	
주택 건설용지		21,010	77.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290	23.0	
	도 로	4,790	17.5	1개노선
	어린이공원	1,500	5.5	1개소

2) 사업시행 방법

모든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하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처분 계획

가) 주택건설용지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나) 공공시설용지: 도로 및 어린이공원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해당 관리청에 무상 귀속

6. 자금계획서

가. 재원별 사업비 및 내역

구 분	금액 (백만원)	비 고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계	9,280
	용 지 비	8,670
	조 성 비	610

나. 택지조성비 내역

공 종 별	사 업 량	공사비(백만원)
계		610
1. 조사설계비	지형측량외	5
2. 대지조성공사	절성토: 75,000m ³	291
3.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4.8a	7
4. 상수도 간선공사	250m/m : 370m	22
5. 하수도 간선공사	박스2.0x2.0 : 190m 배수D-450 : 330m 오수D-300 : 160m	94
6. 조경공사	어린이공원	35
7. 전력간선 지중화공사	공원 및 도로가로등	15
8. 하수처리 분담금	1식	79
9. 기 타	-	62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연 차 별 계 획			비 고
		'91	'92	'93	
계	9,280	120	8,300	860	
용지매입 및 보상비	8,670	100	8,000	570	
조 성 비	610	20	300	290	

7. 시설계획

가. 도로시설계획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면적(M2)	비 고
중로	3류	12	1	340	4,790	가각 54M2 및 도로부지 656M2포함

나. 공원계획

구 분	공원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어 린 이 공 원		권약구 신림동 326번지일원	1,500	

8. 토지능의 매수 및 보상계획

가. 토지능의 취득 및 보상방법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자격이 인성된 2인이상의 감성평가사가 관계법에 따라 평가한 감성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의거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 (추정)

구 분		수 량 (M2)	금액(백만원)	비 고
계			8,670	
보 상 비	소 계		8,541	
	토 지	22,573	8,184	
	지 장 물	56(건)	357	
대체농지조성비		전: 5,185 답: 13,356	59	농업진흥공사에서 별도 비용산정 통보
부 대 비			70	감성, 수수료등

다. 용지취득 및 보상계획

1) 현행 및 추진계획

금액단위:백만원

구분	필지	면적 (M2)	금액	추진계획	
계	44	27,300	8,670		
토지	사유지	37	22,573	8,184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 및 불능토지는 수용재결조치
	무상지 (국공유지)	7	4,727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정한바에 따라 준공과 동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조치
지정물			357	관계법에 따라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대체능지조성비	전: 2 답: 6	5,185 13,356	59		
기타			70		

2) 이주대책

가) 이주대책 수립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 처리

나) 이주대책 내용

- 대상자 :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능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준용

- 이주방법 : 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 건설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 분양가격산정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아파트 분양가격

- 대상자선정 : 현지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행방안 별도수립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 송달방법

가.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능의 권리자

나. 공시 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지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1회이상 별첨 공고문(안)과 같이 공고

1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능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

11. 수용할 토지능의 소재지 지번 및 지복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별첨

12.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별첨

13. 실시계획 평면도 (1/1,200)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

14. 도시계획 결정도서 : 별첨

"별첨"

공 시 송 달 (안)

1. 사 업 명 : 서울 신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권역구 신림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 한 중

4. 공시 내용 :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다음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하기 장소에 나오시어 매수협약 외 보상금 수령을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지번	지복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보상금액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5. 보상금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70-5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 (TEL : 567-1501)

1991.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대한 반영여부

승 인 조 건	검 토 내 용	반영여부
1. 진입도로 개설시 하천 미복개 구간에 박스설치(2.5Mx2.5Mx2런 연장100M)	권역구청과 별도 협의하여 조치	별도협의
2. 본지구 인접공원에서 유입되는 우수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택지개발로 인해 위험절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인접공원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지구내 배수권에 연결 처리하고 위험한 절개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	반 영
3. 실시계획 수립시 권할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고 지구내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권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할 것	건물높이를 현지형에서 51M를 초과 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는 실시계획 승인후 별도 납부	반 영
4.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권관기관과 별도 협의 시행하여 도로가 이중 굴착되지 않도록 할 것	권관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가 이중 굴착되지 않도록 조치	반 영
5. 현재의 상수도 시설로는 본지구에 신규급수 불가하니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별도 협의 하여 조치	별도협의
6.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결토록 할 것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계획 수립	반 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1991. 10

대 한 주 택 공 사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 및 토지능의 조서 총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자 및 시행방법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 가. 사업 시행자 귀속분
 - 나. 국가 귀속분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 유무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가. 시설의 종류
 - 나. 이용 상태
7. 대체 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나. 시설의 이용 계획
8. 하수도 수리계산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 시설물 및 토지능의 총괄 조서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M2)	비 고
계	7	4,727	
도 로	3	779	
하 천	4	3,948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시설)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합 계				6,290	
도 로	12	1	340	4,790	가각54M2 및 도로부지 656M2 포함
어린이 공원		1개소		1,500	
상 수 도			(370)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510)		"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대한수택공사 사장 김 한 중

나. 시행방법 :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조서 및 도면 (별첨)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건설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유자	관리청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관리청	실제이용 상 형
			공부상	편 입				
계	6필지		10,122	4,467				
권악구 신림동	808-121	하천	3,073	2,325	국유지	건설부		
	-504	"	1,447	690	"	"		
	-507	"	2,532	825	"	"		
	-508	"	1,827	108	"	"		
	841-4	도로	460	40	"	"		
	843	"	783	479	"	"		

서울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유자	관리청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관리청	실제이용 상 형
			공부상	편 입				
권악구 신림동	322-2	도로	432	260	서울시	권악구청		

나. 지방자치 단체 귀속분

1) 도로

구 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M2)	비 고
중로 3류	1	12	340	4,790	가각54M2 및 도로부지 656M2 포함

2) 공원

시설종류	명 칭		위 치	면적(M2)	비 고
	번호	공원명			
어린이농원			권악구 신림동 326번지 일원	1,500	

3) 상수도

시 설 명	규 격	연 장 (M)	비 고
상수권로	D-250m/m	370	

3) 하수도

시 설 명	규 격	연 장 (M)	비 고
배수권로	박스2.0x2.0m D-450m/m	350	
오수권로	D-300m/m	16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 설 명	필 지 수	면 적 (M2)	비 고
계	7	4,727	
도 로	3	779	
하 천	4	3,948	

나. 이용상태

- 1) 도 로 : 기존 부락의 연결도로로 이용
- 2) 하 천 : 농경지의 농수로와 기존부락의 하수도의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 설 명	면 적 (M2)	비 고
도 로	4,790	1개노선
공 원	1,500	어린이공원 1개소
상 수 도	(370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510M)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이용 계획

- 1) 도 로 : 지구내 간선시설(진입도로등)부지 및 기존마을 주민의 통행로 이용
- 2) 공 원 : 지구 주민,인접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 휴식 공간으로 이용
- 3) 상.하수도시설 : 지구내 주민 및 기존마을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로 이용

8. 하수도 수리계산서 : 별첨

서울신림지구 수리계산서

1991. 10

대한주택공사

서울신림지구 배수수리 계산서

I. 적용기준 = 최대계획우수유출량 + 여유유량

최대계획우수유출량 : 합리식적용

여유유량 : 최대계획우수유출량의 25%

$$Q_{\max}(\text{최대계획우수유출량}) = 1/360 \times C \times I \times A (\text{m}^3/\text{sec})$$

C : 유출계수

A : 유역면적 (ha)

I : 강우강도 - 서울 10년확률 강우강도

$$I = 560 / (\sqrt{t} + 0.09)$$

$$t(\text{유달시간}) = t_1(\text{유입시간}) + t_2(\text{유하시간})$$

t₁: 산지의 경우 Kerby식 적용

$$t_1: (2/3 \times 3.28(\theta \times n) / \sqrt{S})^{0.467}$$

θ : 사면거리

n: 지체계수

S: 사면구배

$$t_2: L / (60 \times V)$$

L: 유하거리

V: 유속

2. 구역별 유량계산

가. 1구역

$$A : 4.5\text{ha}$$

$$t_1 = 5.1\text{분} \quad t_2 = 1.7\text{분}$$

$$t = 6.8\text{분}$$

$$I = 560/(\sqrt{6.8} + 0.09) = 207.6$$

$$C = 0.3 \text{ (산지)}$$

$$Q_{\max} = 1/360 \times 0.3 \times 207.6 \times 4.5 = 0.78 \text{ m}^3/\text{sec} \quad \text{----- (1)}$$

나. 2구역

$$A : 2.8\text{ha}$$

$$t_1 = 10\text{분} \quad t_2 = 0.8\text{분}$$

$$t = 10.8\text{분}$$

$$I = 560/(\sqrt{10.8} + 0.09) = 165.9$$

$$C = 0.5 \text{ (학교)}$$

$$Q_{\max} = 1/360 \times 0.5 \times 165.9 \times 2.8 = 0.65 \text{ m}^3/\text{sec} \quad \text{----- (2)}$$

다. 3구역

$$A : 9.65\text{ha}$$

$$t_1 = 6\text{분} \quad t_2 = 1.7\text{분}$$

$$t = 7.7\text{분}$$

$$I = 560/(\sqrt{7.7} + 0.09) = 195.5$$

$$C = 0.3$$

$$Q_{\max} = 1/360 \times 0.3 \times 195.5 \times 9.65 = 1.57 \text{ m}^3/\text{sec} \quad \text{----- (3)}$$

라. 4구역

$$A : 9.1\text{ha}$$

$$t_1 = 7\text{분} \quad t_2 = 2.5\text{분}$$

$$t = 9.5\text{분}$$

$$I = 560/(\sqrt{9.5 + 0.09}) = 176.5$$

$$C = 0.5$$

$$Q_{\max} = 1/360 \times 0.5 \times 176.5 \times 9.1 = 2.23 \text{ m}^3/\text{sec} \quad \text{----- (4)}$$

마. 5구역

$$A : 3.5\text{ha}$$

$$t_1 = 6\text{분} \quad t_2 = 0.1\text{분}$$

$$t = 6.1\text{분}$$

$$I = 560/(\sqrt{6.1 + 0.09}) = 218.8$$

$$C = 0.3$$

$$Q_{\max} = 1/360 \times 0.3 \times 218.8 \times 3.5 = 0.64 \text{ m}^3/\text{sec} \quad \text{----- (5)}$$

바. 외곽기존 간선도로 (10Mx850M)

$$A : 0.85\text{ha}$$

$$t_1 = 5\text{분} \quad t_2 = 1.5\text{분}$$

$$t = 6.5\text{분}$$

$$I = 560/(\sqrt{6.5 + 0.09}) = 212.2$$

$$C = 0.9$$

$$Q_{\max} = 1/360 \times 0.9 \times 212.2 \times 0.85 = 0.45 \text{ m}^3/\text{sec} \quad \text{----- (6)}$$

사. 지구내 주택용지

$$A : 2.1\text{ha}$$

$$t_1 = 7\text{분} \quad t_2 = 0.5\text{분}$$

$$t = 7.5\text{분}$$

$$I = 560/(\sqrt{7.5} + 0.09) = 198$$

$$C = 0.67$$

$$Q_{\max} = 1/360 \times 0.67 \times 198 \times 2.1 = 0.77 \text{ m}^3/\text{sec} \quad \text{----- (7)}$$

아. 지구내 공원

$$A : 0.15\text{ha}$$

$$t_1 = 5\text{분} \quad t_2 = 0.5\text{분}$$

$$t = 7.5\text{분}$$

$$I = 560/(\sqrt{7.5} + 0.09) = 198$$

$$C = 0.3$$

$$Q_{\max} = 1/360 \times 0.3 \times 198 \times 0.15 = 0.03 \text{ m}^3/\text{sec} \quad \text{----- (8)}$$

3. 관경계산

$$\Sigma Q_{\max} = (1)+(2)+(3)+(4)+(5)+(6)+(7)+(8) = 7.12 \text{ m}^3/\text{sec}$$

$$1.25Q_{\max} = 8.9 \text{ m}^3/\text{sec}$$

BOX 2.0x2.0 가정

$$Q_p = 2 \times 2 \times 3 \times 0.9 = 10.8 \text{ m}^3/\text{sec}$$

$$Q_p > 1.25Q_{\max} \quad \text{. OK}$$

4. 신설도시계획도로

$$A : 0.48\text{ha}$$

$$t_1 = 5\text{분} \quad t_2 = 0.5\text{분}$$

$$t = 5.5\text{분}$$

$$I = 560 / (\sqrt{5.5} + 0.09) = 230$$

$$C = 0.9$$

$$Q_{\max} = 1/360 \times 0.9 \times 230 \times 0.48 = 0.276 \text{ m}^3/\text{sec}$$

$$1.25Q_{\max} = 0.345$$

흡관 D-450 가정

$$Q_p = 0.477 \text{ m}^3/\text{sec}$$

$$Q_p > 1.25Q_{\max} \text{ . OK}$$

베수유역도



서울신림지구 오수수리 계산서

1. 오수량 산정

가. 적용기준 (단위오수량)

구 분	계획일평균 용수량(1)	하수화율 (%) (2)	계획일평균오수량 (3) = (1) x (2)	계획시간최대오수량 (4)=(3)x1.25x1.3	비 고
단위가정 오수량	445.1 (1/인일)	90	409.6 1/인일	665.6 1/인일	
단위공공 용수량	216.5 (m ³ /일ha)	80	173.2m ³ /일ha	281.5m ³ /일ha	
지하수 유입량	-	-	-	15.9m ³ /일ha	공동주택만 적용

* 한강유역 환경보존 종합 계획사업 수질부문 보고서 (환경청 1983.12)

나. 오수량 산정

산식: 가정오수= 세대수(호)x665.6x4/(86400초x1000)+면적(ha)x15.9/86400(초)

공공오수= 면적(ha)x281.5/86400(초)

구 분	세대수 (호)	면적 (ha)	계획시간오수량 (m ³ /sec)	지하수유입량 (m ³ /sec)	계 (m ³ /sec)	계획오수량 계x1.5
공동 주택	949	2.1	0.0293	0.0004	0.0297	0.0445
어린이공원		0.15	0.0005		0.0005	0.0008
계	949	2.25	0.0298	0.0004	0.0302	0.0453

2. 관경계산

가. 적용기준

$$V = 1/n * R^{2/3} * S^{1/2} \quad \langle \text{Manning공식} \rangle$$

$$Q = AV$$

$$M = 0.013 \quad (\text{조도계수,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R = D/4 \quad (\text{동수반경})$$

$$D = \text{관경}$$

$$I = 0.008 \quad \text{가정}$$

나. 관경계산

$$D-250 : Q = 0.053 \text{ m}^3/\text{sec}$$

$$D-300 : Q = 0.086 \text{ m}^3/\text{sec}$$

$$\text{공원의 경우} : 250 \text{ m/m 적용}$$

$$\text{간선의 경우} : 300 \text{ m/m 적용}$$

서울신림지구 급수수리 계산서

1. 급수량 산정

가. 적용기준

목표년도 2,001년

가정용수 : 455.1 ℓ/day인

영업용수 : 515.1 m³/ha, day

공공용수 : 216.5 m³/ha, day

나. 계획급수량 산정

구 분	인구 또는 면적		원 단 위	일 최대급수량 m ³ /day	시간최대급수량 m ³ /day
	인구(인)	면적(ha)			
가정용수	3,796		455.1 ℓ/day인	1,727.6	2,246
공공용수 (공원)		0.15	216.5 m ³ /ha인	32.5	42
계	3,796	0.15		1,760.1	2,288

2. 관경계산

가. 적용기준

하젠윌리암스 공식적용

$$V = 0.84935 \cdot C \cdot R^{0.63} \cdot S^{0.54} \quad \langle M/sec \rangle$$

$$Q = AV \quad (m^3/sec)$$

$$C = 110 \quad R = D/4 \quad S = 2-3\% \text{ 적용}$$

나. 관경계산

D-250 M/M 가정

$$\begin{aligned} Q &= 0.84935 \times 110 \times (0.25/4)^{0.63**} \times (0.002)^{0.54**} \times 0.05 \\ &= 2,409 \text{ m}^3/\text{day} \end{aligned}$$

$$\begin{aligned} Q_2 &= 0.84935 \times 110 \times (0.25/4)^{0.63**} \times (0.003)^{0.54**} \times 0.05 \\ &= 2,999 \text{ m}^3/\text{day} \end{aligned}$$

∴ D-250m/m 적용 Ok

도 시 계 획 (변 경) 결 정 조 서

1991. 10

대 한 주 택 공 사

용도지역변경현황

구 분	면 적 (M2)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자연녹지 지역	26,115	3,605	-22,510	
일반수거 지역	1,185	23,695	+22,510	
계	27,300	27,300	0	

1.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변 적 (M2)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금회증감		
계	665,984,000	665,984,000	-	100	
주 거 지 역	소 계	298,427,499.4	298,450,009.4	증22,510	44.8
	주거전용지역	5,001,159	5,001,159	-	0.7
	일반주거지역	289,576,016.9	289,598,526.9	증22,510	43.5
	준주거지역	3,850,323.5	3,850,323.5	-	0.6
상업지역	21,484,930	21,484,930	-	3.2	
공 업 지 역	소 계	29,077,322	29,077,322	-	4.4
	전용공업지역	-	-	-	
	공업지역	-	-	-	
	준공업지역	29,077,322	29,077,322	-	4.4
녹 지 지 역	소 계	316,994,248.6	316,971,738.6	감22,510	47.6
	자연녹지지역	312,368,918.6	312,346,408.6	감22,510	46.9
	생산녹지지역	4,625,330	4,625,330	-	0.7

* 기정은 서울시 고시 제248호 ('91.8.9)

2.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종류	유형	번호	폭원(M)					
신설	종로	3		12	일반 도로	구획 도로	340	신림동305-39 (중1-104)	신림동 340-1

3.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의구분	위 치	면적(M2)	비 고
신설		어린이공원	공익구 신림동326번지일원	1,500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 고
		부 지	건 축	
합 계		1,500		
도로및광장	소 계	306		
	도 로	65		
	광 장	241		
조경시설	그늘시렁		2 개소	면적: 광장에 포함
휴양시설	의 자		4 개소	"
유희시설	사 장	231		
운동시설	운동공간	260		
편익시설	공중빈소 음수대	12	1 개소 1 개소	건축시공
관리시설	휴지통 가토등		2 개소 1 개소	
부 지		691		

시설조서

면적단위: ㎡

구분	번호	시설명	명칭	부지면적	규모	시설규모	구조
합계				1,500			
도로및광장		소계		306			
	1	광장		241			
		1-1		185.5			
		1-2		55.5			
	2	도로		65			
		2-1		52.5			
		2-2		12.5			
조경시설	3	그늘시렁	파고라 원두막			1개소 1개소	
휴양시설		의자	평석자			4개소	
유희시설		사장	조합놀이대 (미끄럼대) +그네+ 래더)	231		1개소	
			회전무대			1개소	
운동시설			철봉 A 철봉 B 철봉 무대	260		1개소 1개소 1개소	
편익시설		공중변소 음수대		12	건축면적:12	1개소 1개소	조적조
관리시설		휴지 가로	봉등			2개소 1개소	
부지				691			